

[공통(아동, 의료기관)]**Q1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환자이며,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이 해당됩니다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 다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실시되기 때문에 선정 지역 내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한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관할 지역 초등학교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Q2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신청 및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사업 기간('24.7월~'27.2월)내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합니다.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Q3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주치의를 선택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서비스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아동 및 법정대리인, 주치의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 합니다.

Q4 시범대상 지역으로 전학 온 아동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요?

- 시범사업 참여기간(2년8개월)내에 전학 온 학생은 건보공단에 신청서 등과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Q5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등록 신청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후 1차수 서비스를 받고, 매 차수(1학기 단위) 기간에 따라 다음 학기에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Q6 아동치과주치의의 변경할 수 있나요?

- 아동의 거주지 변경, 서비스 제공 불만족, 아동치과주치의 퇴사나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아동(법정대리인)이 아동치과주치의의 변경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 아동치과주치의 및 소속 의료기관 현황 변경
 - 주치의 퇴사 및 자격상실 등 주치의 등록 해지사유가 발생
 - 소속 의료기관의 휴·폐업, 주소지 변경, 양도양수, 공동대표자 변경 등
- 의료기관은 아동치과주치의 이직이나 의료기관 변경(휴·폐업 등) 사유로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이용해지나 변경절차에 대한 안내를 등록 아동(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Q7 새로운 아동치과주치의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아동(법정대리인)이 변경하고자하는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최초 등록 신청 시와 동일하게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변경 사유" 부분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새로운 주치의는 해당 신청서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아동치과/아동등록관리
- 아울러, 새로운 아동치과주치의로 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의료기관에서 이용 하던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Q8 해당 차수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주치의 서비스는 1차수 진료월부터 매 차수(1학기 단위) 기간이 정해지며, 해당 월의 내원일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해당 차수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다음 차수에 이용은 가능하나,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가능한 해당 월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바랍니다.

Q9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해당 진료비(요양(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24년 기준 아동치과주치의료(I) 45,730원 또는 아동치과주치의료(II) 42,430원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구강건강관리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다만,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이외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의료기관]

Q10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치과의원 중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상근하는 기관이 가능합니다.

Q11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하려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 사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Q12 일반 검진기관의 구강검진 의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은 이수할 수 있지만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치과의원 개원 시 교육이수내역은 그대로 연계됩니다.

Q13 아동치과주치의가 이직하여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치의가 이직하여 소속기관이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소속된 기관에서 아동치과주치의 해지 처리 후, 변경된 기관에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아동치과주치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Q14 서비스 시행 항목 중 치면세균막검사(PHP index)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허가된 전용 착색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음식물잔사지수를 측정하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치면별 음식물잔사 평점 기준은 아래와 같고 개인별 합산 점수는 0점~18점이며, 양호(0~6점), 보통(7~12점), 개선필요(13~18점)로 평가합니다.

<음식물잔사 평점 기준>

- | |
|---|
| 0점: 음식물잔사 또는 외인성 색소 부착 모두 없는 경우 |
| 1점: 음식물잔사가 치면의 1/3 이하에 있거나 음식물잔사 이외의 외인성 색소부착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가지 모두 있는 경우 |
| 2점: 음식물잔사가 치면의 2/3 이하에 있는 경우 |
| 3점: 음식물잔사가 치면의 2/3를 넘어서 부착되어 있는 경우 |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또는 영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표준진료 메뉴얼」 참고